

정관(예시)

제정 : 2021. 00. 00.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본 회사는 '주식회사 ○○감정평가법인'(약호 '(주)○○감정평가법인)이라 한다. 영문으로는 '○○'으로 표기한다.

제2조 (목적)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동산·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
2.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업무
3. 감정평가 관련 조사·연구 업무
4. 위 각 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

제3조 (소재지)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○○(주소 전체 기재)에 두고,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별지와 같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 (공고방법)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○○(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으로 기재)에 게재한다.

※ 「상법」 제289조제3항 :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음
예)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
제2장 주식

제5조 (주식) 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,000주로 한다.

- ②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,000주로 한다.
- ③ 1주의 금액은 5,000원으로 한다.
- ④ 주식은 기명식으로 한다.

제6조 (주권) ① 주권은 100주권, 500주권, 1,000주권, 5,000주권, 10,000주권의 5종으로 한다.

- ② 주권에는 발행번호, 주식의 수, 소유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하고 발행과 동시에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
- ③ 주주의 주권 불소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주주명부와 그 목록에 기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.

제7조 (신주발행) ① 본 회사의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주총회

에서 결정한다.

1. 신주의 종류와 수
2.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
3. 신주의 인수방법

※ 「상법」 제416조 :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결정함

제8조 (신주인수권)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○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
1. 분사무소 설립, 감정평가사 신규 채용 등 조직의 확충 및 회사 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

2. 합병기일 당시에 출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 주식수에 미달하여 배정받은 주주에게 신주배정이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

3. 기술도입, 경영협력 등을 위해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발행 할 것을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

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제9조 (신주의 배당기산일)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해서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10조 (주식의 양도) ① 주식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

제11조 (주식매수선택권)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·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·기술혁신 및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.

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
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가격은 액면가 이상으로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시점은 이사회가 정한다.

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자가 위의 결의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행사할 수 있다.

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
2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12조 (자기주식의 취득)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

1.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
2.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
3.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
4.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
5.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

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**주주총회의 결의**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.

1.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
2.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
3.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

※ 「상법」 제341조제2항 단서 : **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음**

제13조 (주주명부) ① 주권을 발행할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주주의 성명과 주소
2. 각 주주가 가진 주권의 종류, 그 수와 주권의 번호
3.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

② 매 영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.

③ 제2항의 경우 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주소·성명 및 인감 등 신고) ① 주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본 회사가 정한 서식에 따라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.

제15조 (주권의 명의개서) ①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 회사의 청구에 따라 제1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.

제16조 (주권의 재발행) ① 주권의 분할, 병합,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는 때에는 본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

야 한다.

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하는 때에는 본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수수료) 주식의 발행, 명의개서, 재발행을 청구하는 자는 본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3장 주주총회

제18조 (소집시기) ①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

②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.

제19조 (소집권자 및 의장)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
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
③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.

제20조 (소집통지)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목적, 소집일시, 소집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※ 「상법」 제363조제4항 : **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음 예)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주주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,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,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.**

제21조 (의결권 등)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.

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2조 (결의방법)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주주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,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.

제23조 (주주총회 의사록) ① 주주총회 소집 시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

제4장 임원과 이사회

제24조 (이사의 선임)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, *○인 이상(회사의 자본금 현황을 고려하여 규정)*으로 한다.

② 이사의 자격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관련 규정에 따른다.;

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 중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, 총무이사, 재무이사 및 기획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.

④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. 다만,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.

※ 「상법」 제383조제1항 : *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나,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음*

제25조 (이사의 직무)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총무이사, 재무이사 및 기획이사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.

③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총무이사, 재무이사 및 기획이사 등이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6조 (이사회 의 소집)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개최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다만,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27조 (이사회 결의)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

제28조 (이사회 의사록) ① 이사회 소집 시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점에 비치한다.

제29조 (감사의 선임)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, *○인 이상(회사의 자본금 현황을 고려하여 규정)*으로 한다.

②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③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.

※ 「상법」 제409조제4항 : *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*

제30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이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

제31조 (감사의 감사록) ①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,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한다.

제32조 (보수와 퇴직금)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

제5장 계산

제33조 (영업연도) 영업연도는 *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*로 한다.

제34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등)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재무상태표
2. 손익계산서
3. 이익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

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 1주 전부터 본사에 5년 간, 그 등본을 지사에 3년 간 비치하여야 한다.

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35조 (이익금의 처분)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1. 이익준비금
2. 기타 법정적립금
3. 배당금
4. 임의적립금
5. 기타 이익잉여금 처분액

제36조 (이익배당)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.

② 이익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한다.

제37조 (배당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)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, 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이익으로 귀속된다.

제6장 보칙

제38조 (준용규정)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, 「상법」, 「민법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9조 (제 규정) 이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2조 (발기인) 발기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.

제3조 (최초의 영업연도)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위와 같이 주식회사 ○○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(또는 서명)한다.

년 월 일

(주) ○○ 감정평가법인 (인)

주소 :

발기인(또는 주주) 성명 : (인)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발기인(또는 주주) 성명 : (인)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발기인(또는 주주) 성명 : (인)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【별지】

구분	소재지
주사무소(본사)	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소지 기재
분사무소(지사)	